

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

의 안 번 호	237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4년9월4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(안 제5조)
- 나.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사회단체장에게 통보 (안 제8조 및 제9조)
- 다.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과 함께 15인 이내로 구성 하되, 위촉직을 과반수가 되도록 함 (안 제10조)
- 라.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 종료 시 사업비정산, 자체 평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도지사는 매년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의 보조금 지원에 반영(안 제17조)

3. 의안전문 : 따로 붙임

4 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
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(이하“보조금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있어서 “사회단체”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·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충청북도지사(이하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
2. 충청북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제5조(지원범위)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) 도지사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,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도보, 충청북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신청 및 접수) 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심의) 도지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조정한 후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회부하여 심의한다.

제9조(결과통보)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,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,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.

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자치행정국장, 복지환경국장, 문화관광국장,
여성정책관

2. 위촉직 위원 : 도의회의원, 민간전문가,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의견과 덕망을 갖춘자

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.

제11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
2.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
3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
제12조(회의 운영)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

제13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4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5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.

제16조(실비보상)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보고 등)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종료시 사업추진실적, 사업비정산,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 도지사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8조(별도계정)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,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.

제19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및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규정) 제6조 이하 보조금의 신청·운영·관리에 관한 규정은 2005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

제14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·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.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
4. 지방자체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

제24조(공공기관의 범위등) ①법 제14조에서 “공공기관”이라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.

②법 제14조제1항제14호에서 ‘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’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 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

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,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입법예고 결과 의견

□ 입법예고

■ 기 간 : 2004. 6.25~7.15(20일간)

■ 방 법 : 도보 및 도 홈페이지 게재

□ 의견 제출 내용

입법예고안	제 출 의 견	결과
제11조(위원회 기능)		
1.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	1. 사회단체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(추가요구 내용)	
2.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	2.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에 관한사항	
3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 하는 사항	3.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 하는 사항	미반영

[미반영사유]

- 제11조 제1호에 “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”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이는 사업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을 명시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됨.